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□ 다음은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개정이유는

-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속해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추에 따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상 위임사항,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물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

□ 주요 내용은,

- 용어의 정의중 “청·소”를 “관서”로, “교원, 학생복지 후생기관”을 “교직원·학생복지 후생기관”으로 변경하고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동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되는 관계법령을 변경하고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에서 “중요물품” 개념이 소멸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였으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물품사용

및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 직제를 도입하였으며

- 물품의 망실·훼손시 보고체계의 재정립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고
- 물품출납사무의 인계후 보고절차를 간소화하고, 물품출납원 사고로 인한 인계사무를 대리하는 직원을 지정 하였습니다.

□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- 본 조례안의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추에 따라 법령상 위임사항과 물품운용관제를 실시함으로써 물품관리사무의 책임을 물품운용관에게 부여하는 등 물품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